



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

[시행 2025. 1. 1.] [고용노동부고시 제2025-99호, 2025. 1. 1., 일부개정]

고용노동부(장애인고용과), 044-202-7486

1.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

- 월 부담금 =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×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
- 부담금 납부총액 =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

2. 부담기초액

- 부담기초액 : 1,258,000원
-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/4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.
-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

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			
1/2이상 3/4미만	1/4이상 1/2미만	1/4미만	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
1,333,480원	1,509,600원	1,761,200원	2,096,270원

※ 비율에 따른 인원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

3. 부담기초액 적용기간 : 2025. 1. 1. ~ 2025. 12. 31.